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일본식 한자어 정비,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1조 ~ 안 제5조)

나. 조직개편사항 반영(안 제6조 ~ 안 제9조)

다. 위법한 과태료 등 의무 부과 규정 정비(안 제10조 ~ 제12조)

1) 안 제10조, 안 제11조: 상위법령 과태료 등 위임규정 없음

2) 안 제12조: 질서행위규제법 절차 적용 대상임

라.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 정비(안 제13조 ~ 안 제16조)

1) 안 제13조: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법령명 띄어쓰기

2) 안 제14조: 자동차세 연납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2) 안 제15조: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정의규정 삭제

3) 안 제16조: 「민법」 개정에 따라 용어 개정

4) 안 제17조: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기관명칭 등 반영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1)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심사

2)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19 - 1221호

가) 예고기간: 2019. 9. 10. ~ 2019. 9. 30.(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조(「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고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의 개정) 고성군이장
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고성군 이장의 임
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고성군세 조례」의 개정) 고성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5조(「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묘지·납골당”을 “묘지·봉안당”으로 한다.

제6조(「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과장, 행복나눔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행복나눔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주민생활과장·행복나눔과장·보건소장”을 “부군수·주민생활과장·복지지원과장·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나눔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고성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발부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1조(「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호가목 중 “(1급 ~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14조(「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로 한다.

제15조(「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7조(「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고성교육장”을 “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u>계리</u> 하여야 한다.	제10조(별도계정) ----- ----- ----- ----- -- <u>회계처리</u> -----.

2. 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u>게기</u> <u>하는</u>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 ----- ----- <u>규정</u> <u>하는</u> -----.

3. 고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u>고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u> 제3조(복무) ① (생 략)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u>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u> 제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p>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u>지</u> <u>득한</u>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 <u>알</u> <u>게</u> <u>된</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4. 고성군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 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 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u>기장</u>하고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p>	<p>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 ----- ----- ----- ---- <u>기록</u>----- -----.</p>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하수·폐수·쓰레 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u>묘지·납골당의</u> 유지관리업무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p>	<p>제3조(장려수당) ----- ----- ----- ----- <u>묘지·봉안당</u>----- ----- ----- ----.</p>

6. 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총괄 담당과장, <u>기획감사실장</u>, <u>주민생활과장</u>, <u>행복나눔과장</u>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③·④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기획감사담당관</u>, <u>주민생활과장</u>, <u>복지지원과장</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7.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가. <u>행복나눔과장</u> 나. (생략)</p> <p>2. (생략)</p> <p>④·⑤ (생략)</p>	<p>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가. <u>복지지원과장</u> 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8.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대표협의체) ① (생략)</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u>부군수</u> · <u>주민생활과장</u> · <u>행복나눔과장</u> · <u>보건소장</u>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 5.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3조(대표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부군수</u> · <u>주민생활과장</u> · <u>복지지원과장</u> · <u>보건소장</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9.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u>행복나눔과장</u>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복지지원과장</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10. 고성군 주차장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7조(과징금 처분)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u>발부하고</u> <u>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u> <u>가산금을 징수한다.</u></p> <p>④ (생략)</p> <p>제18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u>규정에 의하여</u> <u>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u> <u>은 “별표7”과 같다.</u></p>	<p>제17조(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발부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11.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의2(<u>판매인에 대한 과태료</u>)</p> <p><u>판매인이 제12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u> <u>군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u>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규모,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5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u></p>	<p><u><삭 제></u></p>

12.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 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을 <u>준용한다.</u>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따른다.</u>

13.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이용료의 면제 및 감 면)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 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100분 의 50을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1급 ~ 3급 은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제21조의2(이용료의 면제 및 감 면)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

포함) 다.·라. (생략) 5. ~ 7. (생략)	---- 다.·라.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	--

14.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 ----- -----. 2.·3. (현행과 같음)

15.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16.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u>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u></p> <p>2. ~ 5. (생략)</p>	<p>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 -----.</p> <p>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p> <p>2. ~ 5. (현행과 같음)</p>

17.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u>“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u></p> <p><u>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u></p> <p><u>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u></p> <p><u>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말한다.</u></p>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
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
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
용된 축산물

마.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학교급식 경비 정산서를 작성하
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고성교육청 학무과장

3. ~ 7. (생략)

⑤·⑥ (생략)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고성교육지원청-----.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본식 한자어 정비, 직제 개편사항 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재정수반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 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 1. 7.>

⑤ 삭제 <2009. 1. 7.>

⑥ 삭제 <2009. 1. 7.>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5.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
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짙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調理)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 5) 내용량
 - 6) 보관 및 취급방법
-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

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물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